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7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00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0동 00

대표이사 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조영삼

피 고 조00 (000000-0000000)

강릉시 00면 00리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변 론 종 결 2008. 3. 13.

판 결 선 고 2008.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14.경 진단받은 뇌경색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4. 3. 12.자 00보험계약(증권번호 0000000000)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12. 원고와 사이에 질병보장보험인 00보험계약(총신고급2종표준, 증권번호 0000000000,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종신)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00보험 보통보험약관〉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 | |
|-----|---------------|
| 구 분 | 중대한 질병 |
| 고급형 | ...중대한 뇌졸중... |

- ③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i) 고급형 –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구분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제1 보험 기간 | 00보험금 | ○ 피보험자가 …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2종 : 8,000만 원 지급 |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장해등급분류 해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별표 5] “중대한 질병”의 정의

II. 중대한 뇌졸중

-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밀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장해등급분류해설 제4호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나. 피고는 2006. 2. 7.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우측 대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 증상(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00병원 의사 조00은 2006. 3. 14. 피고의 병명을 '뇌경색 및 일과성뇌허혈증'으로 진단하였다.

다. 00병원 의사 조00은 2006. 3. 28. 피고에 대하여, 자력에 의한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동작, 보행, 음식물 섭취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인지 및 뒷처리, 목욕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라. 00병원 의사 조00은 2006. 4. 7. 피고에 대하여, 좌측 편마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퇴원 후에도 좌반신 마비가 악화되어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이며 항상 보행시 지팡이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마. 00병원 의사 구00은 2006. 8. 30. 피고에 대하여, ① 자력으로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동작은 가능하나 지팡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② 자력에 의한 목

욕은 불가능하며, ③ 자력에 의한 보행, 음식섭취, 옷 입고 벗기, 배변·배뇨 인지 및 뒷처리는 가능하고, ④ 증상 재발시 악화 가능성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바. 00병원 의사 구00는 2006. 11. 27. 피고에 대하여, ①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보행기 또는 지팡이)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이며, 예전과 비교하여 9월경 뇌경색이 재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번 진료시보다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고, ② 자력에 의한 목욕은 불가능하며, ③ 자력에 의한 보행, 음식섭취, 옷 입고 벗기, 배변·배뇨 인지 및 뒷처리는 가능하고, ④ 현재의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발시 악화 가능성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사. 00병원 의사 이00은 2007. 5. 14. 피고에 대하여 좌측 상하지부 근약화, 통증, 관절가동영역 제한 및 감각저하 등으로 현재 지팡이 보행을 하고 있으나 보행이 불안정하고,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이 있는바,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아. 00대학교 00대학 00병원 00과 의사 김00은 2007. 8. 29.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 | |
|-------------------|--|
| 장해의 부위 및 정도 | ○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
| 자각적 증상 및 정도 | ○ 좌상지 기능은 실질적으로 상실한 상태 ○ 좌하지 경직성 마비 상태로 보조기(지팡이)를 사용한 상태로 평지에서 느린 보행만 가능하며 언덕길이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도움이 없으면 매우 어려운 상태 |
| 타각적 증상 | ○ 좌측 상지 - 도수근력검사상 제1급(grade trace)에서 제2급(grade poor) ○ 좌측 하지 - 도수근력검사상 제1급(grade trace)에서 제3급(grade fair) |
| 침상을 벗어나는 정도의 이동동작 | ○ 자력으로 침상을 벗어나는 동작 가능 ○ 레일 등과 같은 보조도구 필요(경도의 도움으로 동작 가능, |

| | |
|------------------|--|
| | 정량적으로 평가할 경우 약 20%의 도움 필요) |
| 자력 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팡이 하에 평지에서 보행이 가능 ○ 고르지 못한 평지, 언덕,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동작에서는 중도의 장애가 있음(정량적으로 평가할 경우 약 50%의 도움 필요) |
| 자력 음식물 섭취 동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
| 자력 옷 입고 벗기 동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의 도움이 필요함 |
| 배변·배뇨 인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
| 자력 배변·배뇨 및 그 뒷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 뒷처리시 경도의 도움이 필요함 |
| 자력 목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능 |
| 호전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보임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 상하지의 기능 및 근력을 유지되고 있는 상태 |

자.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대학교 00대학 00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약관상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00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이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수시간호'를 평생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하나,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보험금 지급 의무의 유무

(1) 보험금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뇌졸중'의 의미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뇌졸중'은 뇌경색 등으로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의미하고,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이란 객관적 신경학적 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이 사건 약관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장해등급분류해설 4호 '수시간호'를 평생 받아야 할 상태를 의미하며, '수시간호'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수시간호'로 인정되기 위한 제1 요건, 이하 '제1 요건'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의 기본동작(① 음식물 섭취동작, ② 옷 입고 벗기 동작, ③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④ 목욕) 중 1개 이상 제한('수시간호'로 인정되기 위한 제2 요건, 이하 '제2 요건'이라 한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이동동작' 제한의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2) 이 사건 질병의 '중대한 뇌졸중' 해당 여부

피고의 이 사건 질병이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수시간호'를 평생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하는 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8. 30. 진단 이후부터 자력에 의한 목욕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어 현재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제2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질병이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이동동작 제한(제1 요건)을 수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인 2006. 3. 28.경에는 '자력에 의한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동작'이 가능하였으나(이 당시에는 자력에 의한 목욕도 가능하였다), 그 후 2006. 4. 7.경에는 좌반신 마비가 악화되어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이고 항상 보행시 지팡이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2006. 8. 30.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동작에 있어서 지팡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2006. 11. 27.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보행기 또는 지팡이)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인 것으로, 2007. 5. 14. '좌측 상하지부 근약화, 통증, 관절가동영역 제한 및 감각저하 등으로 지팡이 보행을 하고 있으나 보행이 불안정하고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2007. 8. 29. '좌상지 기능의 실질적 상실 및 좌하지 경직성 마비 상태로 보조기(지팡이)를 사용한 상태로 평지에서 느린 보행만 가능하고 언덕길이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도움이 없으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침상을 벗어남에 있어 레일 등과 같은 보조도구가 필요(제2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자력에 의한 목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옷 입고 벗기 동작에서 중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배변 뒷처리에 대해 경도의 도움도 필요)'한 것으로 각 진단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이동동작 제한(제1 요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제1, 2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시간호'를 평생 받아야 할 상태

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약관 소정의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소정의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받은 피고에게 00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_____

판사 장찰수 _____

판사 하준필 _____